

# 예산위원회 규정

제정 2024.1.4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의 연관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 중 제2조(기능)에서 명시한 사항에 대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① 위원회는 대학의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 중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.

1. 교비회계 예산 편성 심의
2. 회계계정 내 세부 예산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
3. 기타 대학의 예산조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논의

**제3조(구성 및 운영)** 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

1.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2.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3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4.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.
5.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6.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7.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8. 위원회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의견서로 위원회 개최를 대신할 수 있다.
9.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.

**제4조(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대학의 예산부서 담당자로 한다.

**제5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